

# 휠체어가 있지만 보관할 공간이 없습니다.



집주인은 장애인이 자신의 아파트를 온전히 사용하는 데 필요한 타당한 변경을 허용해야 합니다. 가로대 또는 경사로 등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. 이러한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.

주택 거래 시 차별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실 경우 주택도시개발부 또는 여러분 지역의 공정주택거래센터에 연락해 주십시오.

**[www.hud.gov/fairhousing](http://www.hud.gov/fairhousing)** 에 방문하시거나 주택도시개발부 핫라인 **1-800-669-9777** (음성) **1-800-927-9275** (TTY)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**당신의 선택, 당신의 권리, 당신의 집입니다.**